하반기 종합병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명회

(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, '21.9.14.(화))

1 추진 배경

○ 연명의료결정제도 3주년 시행의 성과*와 현황을 공유하여 종합병원의 제도 이해와 더불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제도 이행 확대

*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 91.3%('20)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,018,056명 등록 및 연명의료계획서 72,615명('21.8.31 기준) 등록

○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이점 등 제도 안내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참여 협조

2 추진 목적

○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확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 확충 및 종합병원의 역할 강화

3 행사 개요

○ 주 관 :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

○ 주 최 : 국가생명윤리정책원(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)

○ 대 상 :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종합병원

○ 참석자 :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심있는 업무 담당자

○ 참석인원 : 의료기관별 1~2명

○ 장소 및 방법 :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(zoom)

○ 개최일정 : 총 2회(의료기관별 편리한 차수로 신청 가능)

차수	일시	내용	장소
1차	10월 6일(수) 오후 3시	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을 위한 설명	ZOOM (국가생명윤리정책원)
2차	10월 8일(금) 오후 3시		

○ 신청 방법 : 신청양식에 따른 이메일 신청(bbkim@nibp.kr)

○ 신청 기간 : 2021. 9. 16.(목) ~ 10. 1.(금)

○ 참석확정 안내 : ~10. 5.(화)까지 확정 통보(신청자 개별 통보)

④ 설명회 주요내용

○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해 [붙임1]

○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내 자기결정존중 비율에 따른 차등점수 [붙임2]

○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관련 지표 [붙임3]

○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[붙임4]

시 간	프로그램	비고
15:00-15:05	개회사	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
15:05-15:10	인사말씀	보건복지부 성재경 과장(예정)
15:10-16:00	**1.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**	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
	2.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시 의료기관의 이점 -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내 자기결정존중비율에 따른 차등점수 -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-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(공공병원 대상) 관련 지표	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
16:00-16:30	질의응답	

참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종합병원 현황

(2021년 8월 31일자 기준, 단위: 개소, %)

시도	총 기관수	미설치 기관수	미설치 비율
서울	42	12	28.6%
인천	17	3	18.8%
경기	62	20	32.2%
강원	13	8	61.5%
대전	9	2	22.2%
세종	2	1	50%
충북	12	6	50%
충남	11	5	45.5%
전북	11	5	45.5%
광주	22	17	77.3%
전남	23	16	72.7%
대구	12	8	66.7%
울산	8	6	75%
경북	20	9	45%
부산	26	11	42.3%
경남	23	19	86.4%
제주	6	2	33.3%
합계	319	150	47.0%

붙임1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

○ **(개념)** 연명의료결정법은 '임종과정에 있는 환자'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

○ **(연명의료)*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*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

* 체외생명유지술(ECLS), 수혈, 혈압상승제 투여,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

○ **(연명의료중단등결정)*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

○ **(의료기관윤리위원회)**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* 설치 후 10일 내 등록해야 함

* 위원장 1명을 포함 5-20명의 위원으로 구성, 외부위원 1명 이상, 종교계·법조계·윤리학계·시민단체 등 2명 이상 포함

붙임2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내 자기결정존중비율에 따른 차등점수

○ 의료질평가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의료질 영역에 속함

※ 의료질(가중치합 18%) : 폐렴, 관상동맥우회술, 급성기뇌졸중, 혈액투석, 만성폐쇄성폐질환, 천식, 마취(각 2.4%),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(1.0%)

○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총 6점

-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3점,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3점으로 구성

$$\text{※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(3점)} = \frac{\text{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건수}}{\text{총 연명의료결정 이행 건수}} \times 100$$

붙임3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(공공의료기관 대상) 관련 지표

○ 평가기준 : 2.2.1 포용적 의료지원

-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

○ <시범항목>연명의료결정제도

- 의료기관윤리위원회 **설치 시 4점**, 미설치 시 0점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**지정 시 4점**, 미설치 시 0점

○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대상 평가 결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'19년 8개소(20.5%)에서 '20년 23개소(59.0%)로 증가

붙임4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

○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시행 中(시범사업 기간 : ~'21.12.31.)

- 정규수가도입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**정규수가 도입 검토 중**

○ **대상기관 :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'의료기관윤리위원회'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,**

-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'연명의료'의 대상이 되는 **4가지 의학적 시술***이 가능한 기관 또는 **인력기준****을 갖춘 곳에서 가능

*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

** 의사, 간호사, 1급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 운영

○ **수가 현황**(2021년 기준)

(단위 : 원)

분 류		상급종합	종합병원	병 원	의 원
말기환자등 관리료 (제도 안내 및 상담)		31,180원	29,980원	28,780원	28,230원
연명의료 중단결정 환자 관리료	연명의료 계획료				
	-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	39,340원	37,830원	36,320원	35,610원
	-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(환자의 의사표현 가능)	56,200원	54,050원	51,880원	50,870원
	-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(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)	73,060원	70,260원	67,450원	66,130원
	연명의료이행 관리료	14,050원	13,510원	12,970원	12,720원
	연명의료결정 협진료	10,920원	10,920원	10,920원	12,370원